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송미령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요건 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약제의 약효 지속기간을 2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19881호, 2024. 1. 2. 공포, 2024. 7. 3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(안 제3조의6제2항 신설)

- 1)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제별 약효 지속기간(2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)을 산림청장이 확인하여 고시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와 합의 전(법무부 합의완료)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5.7 ~ 6.5 예정)

3) 행정규제 : 신설 및 강화 규제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효 지속기간”이란 「농약관리법」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약제별 약효 지속기간을 산림청장이 확인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6(감염목 등의 이동) (생략)	제3조의6(감염목 등의 이동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효 지속기간”이란 「농약관리법」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약제별 약효 지속기간을 산림청장이 확인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076